

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(독촉장), 체납처분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(납부독촉장),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, 보관기간경과,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8.27.

경 기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



1. 건 명: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(납부독촉장), 체납처분 관련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 거: 보험료징수법 제32조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불임(공시송달 대상자 명단)
4. 공고기간: 2026.8.27.~2026.9.10.(15일간)
5.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안내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(4층)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(Tel 031-259-031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